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심리가 가장 큰 문제”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서울지방경찰청 김대환 수사1팀장

스포츠도박, 카지노 불법도박 규모와 비수
해워서 서버 운영 대부분...국제 공조 필요
떨 수 없는 게임...손 대지 않는 게 최상책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Stop&Clean)



▶▶▶ 불법 스포츠도박 및 부정경기
SAC(썹)! ‘썹’ 추방합시다
▶▶▶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의
‘썹’을 틔웁시다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1조 5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오던 대규모 기업형 조직을 적발하는 쾌거를 거뒀다. 브리핑장에서 세상에 만연한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를 잠먹는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의 어두운 현실을 알린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 수사1팀의 김대환(53) 팀장이었다. 김 팀장은 “스마트폰 실시간 배팅정보 앱과 연계되는 도박사이트를 개발·판매·운영하며 1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도박사업을 벌여 온 관계자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도박을 비롯한 불법온라인도박들이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김 팀장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만났다.

- 사이버안전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도박은 물론 디도스 공격과 같은 해킹, 인터넷 명예훼손까지 전부 다룬다.”

- 인터넷 범죄 관련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
“올해로 13년이 됐다. 그 전에는 강력계 형사였다(웃음). 개인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동료들이 수동식 타자기를 사용할 때 나는 PC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조서를 썼다. 2시간 걸리는 일이 30분이면 되더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발령이 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1조5000억원대의 기업형 조직을 적발하



지난 2월 1조5000억원대의 기업형 불법도박사이트와 일당을 적발·검거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의 김대환 수사1팀장. 김 팀장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스포츠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는 성과를 올렸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일명 ‘스텔스’로 알려진 F-22 랩터 전투기가 한 대에 3000억원이라고 하더라. 무려 스텔스기 5대 가격과 맞먹는 액수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검거가 되기까지 입·출금된 돈이 1조 5000억원이다.”

- 불법스포츠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도박사이트라고 하면 카지노 사이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포츠도박과 카지노사이트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한 조직만 봐도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34개로 카지노사이트(33개)보다 많다. 여기에 두 종목을 통합한 사이트가 7개였다.”

- 불법도박사이트들이 스포츠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과거에는 고스톱, 포커 등이 인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스포츠도박이다. 국내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은 물론 해외 리그까지 스포츠는 종목도, 경기도 무궁무진하다. ‘아무개 투수가 등판해 첫 구가 스트라이크나 볼이냐’를 놓고도 베팅이 이루어진다.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다.”

- 불법도박사이트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듯하다.

“불법도박사이트가 진화하는 만큼 수사 기법도 진화했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몰래 하는 정도였지만 적발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총책부터 상담원까지 모두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 종업원들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니라 장기간 참여했다면 역시 구속수사 대상이다. 실형을 받게 된다.”

-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나.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조직을 검거하면 계좌추적을 통해 입금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 리스트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법온라인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액 이용자들은 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불법인터넷도박에 빠져드나.

“남녀노소 전부터. 학생, 사업가, 직장인은 물론 가정주부들도 다수 눈에 띈다. 심지어 10대도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악이다.”

- 범죄로 처벌대상임에도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행심 때문이다. 인생을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심리가 문제다. 불법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면 ‘오늘 얼마 댔다’는 식의 후기가 많이 올라온다. 전부 운영자나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이라고 보면 된다.”

- 불법도박사이트에 혹여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돈을 딴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 도박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1조5000억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태국에 사이트...서버는 미국에
2~3명씩 3개조로 24시간 운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월 1조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한 기업형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인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려 B씨를 태국으로 보내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했다. 서버는 미국에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내에는 개발팀과 홍보·상담팀만을 남겨 두었다. 1조 2~3명이 3개조로 24시간 사이트를 운영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암세포처럼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사이트를 제작한 프

로그래머 등 개발자들이 독립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총책 A씨 밑에서 일하던 프로그래머 3명도 ‘OO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 총 44개의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 부당한 돈을 벌었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경우 30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에 AS 등 관리비 월 150

만~200만을 받고 사이트를 불법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운영사무실과 서버는 해외에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동남아 국가들이 인기가 높다. 적발을 위해서는 해당국과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이번에 사건의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개발자를 검거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개월을 추적한 끝에 사무실을 찾아냈다. 개

발자들 대부분 돈에 눈이 먼 20대들이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김대환 수사1팀장은 “전직 게임 프로그래머들도 많다”고 했다. 태국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힘이 됐다.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현장에서 압수해서 한국경찰에 인계했다. 5년간 암약하며 순진한 사람들의 소중한 돈을 뜯어내 사회를 망치게 하던 불법도박사이트 대형조직 하나가 궤멸되는 순간이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박 동아시아보사 dongA.com CHANNEl 후원 :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KDL 한국농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KOREA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특하면 ‘18’, 모욕죄 해당하지만 ‘대부분 사과’ 처벌 안해

Sports & Law Story

운동선수와 가장 가까운 숫자

공연히 사람 모욕할 경우 처벌 대상
자책·반성의 경우 많아 처벌 힘들어

TV로 스포츠 중계를 보다보면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다.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나왔을 때면, 선수들이 숫자를 외치곤 한다.

예전에는 방송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탓도 있고, 중계에 그다지 많은 카메라를 동원하지 않은 탓도 있어서 슬로비디오를 통해 재생하더라도 입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잡아내다보니 입 모양이 정확히 잡혀서 선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선수들이 사용하는 숫자

가 대부분 일치하다보니 시청자 입장에서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쯤에서 정답을 말하자면 바로 ‘18’이다. 사실 숫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의미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우리 형법은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관념을 사용해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놈’ 등이다. 즉, 일반적으로 욕설이라고 평가될 만한 경우는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욕에 해당하는 것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또 ‘사람을’ 모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관중 또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수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수들이 ‘18’을 외치는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를 한 경우다. 즉,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반성의 표현인 것이다. 결국 ‘사람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사람이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 즉 타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모

욕죄에 해당한다. 벤치 클리어링 상태에서 상대 선수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를 향해 ‘18’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된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뭘까. 형법 제312조 제1항에서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모욕죄를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수들끼리 순간적인 감정에 욕설을 하긴 했지만, 추후 바로 사과하거나 상대 선수를 이해해줘 고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중의 경우라면?

경기장에서의 모욕행위는 선수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흥분한 관중이 선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무례나 불친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선수들이

그에 대해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모른 채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안 될까?

얼마 전 국민 오락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웃픈’ 장면을 보았다. 한때 제7의 멤버로 불릴 만큼 자주 등장했던 김현철 씨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2006년 월드컵을 응원하는 장면을 찍을 때 PD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었다. “정말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편집해줄 테니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촬영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을 먹게 됐다. 그런 상황에선 누구나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로 ‘18’이었다. 나중에 방송된 장면을 보니 앞 글자만 ‘x’자로 편집하고, 뒤는 그대로 내보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방송이 나가

자 여러 곳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어떻게 방송에서 저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상식이 모자란 것 아니냐’ 등등.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질타가 쏟아지는 바람에 무한도전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나이가 10년 동안이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였다.

●기본은 서로에 대한 배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모두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끼리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관중과 시청자에게 용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중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존중하고 진정한 인격체로 대할 때, 선수들도 좀더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것이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종진 부장검사

